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41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3.0) 운영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LINC 3.0 사업단), 02-970-9480

제정 2012. 10. 18. 개정 2013. 2. 22. 개정 2013. 4. 5. 개정 2014. 5. 8. 개정 2014. 11. 18. 개정 2015. 12. 14. 개정 2022. 4. 11. 개정 2022. 8. 24.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3.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3.0) 운영 규정」과 학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단(LINC 3.0)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1〉 〈개정 2022. 12. 1.〉

제2조(사업단의 기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연협력선도 대학육성사업단(이하 "LINC 3.0 사업단"이라 한다)은 총장 직속 기구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22. 12. 1.>

- 1.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지원
- 2. LINC 3.0 사업단 및 산학협력단 직원 역량강화 지원 〈개정 2022. 8. 24〉 〈개 정 2022. 12. 1.〉

- 3. 각 센터 운영 지원 〈개정 2022. 8. 24〉
- 4.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지원
- 5. 인력양성 및 취업 · 창업 지원
- 6. 특화분야 기업협업센터(ICC) 운영 지원 <개정 2022. 8. 24>
- 7. 산학협력 연계 체제 구축 지원
- 8. 기업지원(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맞춤형 기업 지원)
- 제3조(참여 학사조직) ① 사업단의 참여 학사조직은 교육부의 산학연협력선도대학 (LINC 3.0)육성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인정기준" 등에 따라 산학협력 시스템에 참여하는 단과대학, 학과(부)로 구성한다. <개정 2014. 5. 8> <개정 2022. 12. 1.>
  - ② 참여 단과대학 이외의 단과대학에 소속된 학과가 학과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참여 학과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제도 개선을 선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수행주체) ① 총장은 사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ㆍ지원
  -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 정비 지원
  -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2. 사업의 총괄 수행
  -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확산

- 5.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의 제정 개정
- 6.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
- 7. 사업단 위원회 설치 조정

제5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사업단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본 규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본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총장은 사업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 교체를 할 수 있다.
- ④ 사업단에는 사업부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부단장이 겸임하거나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 8. 24〉
- 제6조(조직구성 및 역할) ①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실무위원회, 공용장비운영센터, 기업지원센터, 산학교육지원센터, 기술사업화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디자인협력센터, 지역연계협업센터등을 둔다. 〈개정 2022. 4. 11〉
  - ② 제1항의 센터장은 본교 전임 교원, 기금 교원 및 사업단 소속 초빙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13. 2. 22×개정 2022. 8. 24×개정 2023. 3. 10.>
  - ③ 사업단에는 사업운영을 위한 책임교원 및 사업지원을 위한 직원을 두며, 그 신분,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의 관계 규정 및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 2. 22〉<개정 2023. 3. 10.〉
  - ④ <삭제 2013. 2. 22>
  - ⑤ 〈삭제 2013. 2. 22〉

- ⑥ 〈삭제 2013. 2. 22〉
- ⑦ 공용장비운영센터 업무는 「공용장비운영센터 운영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 ⑧ 기업지원센터 업무는 「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 2. 22〉
- ⑨ <삭제 2015. 12. 14.>
- ① 〈삭제 2022. 8. 24〉
- ① 〈삭제 2022. 8. 24〉
- ① 산학교육지원센터업무는 「산학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8. 24〉
- ① 기술사업화센터 업무는 「기술사업화센터 운영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8. 24〉
- ① 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8, 24〉
- ⑤ 디자인협력센터 업무는 「디자인협력센터 운영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12. 1.〉
- ⑥ 지역연계협업센터 업무는 「지역연계협업센터 운영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 3. 10.〉
- 제7조(산학협력 중점교수) ① 사업단에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2. 22〉
  - ②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2. 4. 11〉
-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 사업단장, 교육부총장, 연구기획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교육혁신처장등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신설 2022, 8, 24〉
- ③운영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단장 또는 당연직 위원 중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8. 24〉
- ④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 8. 24〉
- 제9조(전담위원회) 〈삭제 2013. 2. 22〉
- 제10조(자체평가위원회)① 사업단 사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자체평가를 위해서 사업단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로 정한다.
-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 제반사항 점검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 사업단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 8. 24〉
  -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8. 24〉
- 제12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교육부 사업비와 교내·외 대응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 5. 8> <개정 2022. 8. 24>
- 제13조(회계처리) 사업단의 사업비 관리와 회계는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 운영지침」및 전문기관의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5. 8> <개정 2022. 8. 24> <개정 2022. 12. 1.>
- 제14조(취득재산의 귀속) 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기자재 등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2. 8. 24〉
- 제15조(운영세칙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 5. 8> <개정 2022. 8. 24>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2. 22>

## 부칙(제146호, 2012.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개정 2022. 4. 11〉

부칙<제175호, 2013.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9호, 2013. 4.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6호, 2014. 5.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2호, 2014. 11.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50호, 2015. 1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9호, 2022. 4.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2호, 2022. 8.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4호, 2022. 1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1호, 2023. 3.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 (제3조제1항 관련)

##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인정기준

- ◎ ①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관련 실적\*(기술이전, 특허, 현장실습 지도, 기술자문, 산업체 공동연구 등)이 반영되어 있거나 ②재임용·승진/승급 시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을 대체 가능할 것 또는 ③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영역이 별도로 존재할 것
- \* 제시된 산학협력 관련 실적 중 1개 이상 있으면 인정가능
- ☞ 사업 신청시점에 ①~③중 1개를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나, 2단계 사업계획에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개선 확산계획(a. 산학협력 실적 배점 비율 상향, b. 재임용·승진/승급 시 연구실적물의 산학협력실적물 대체 가능 비율 상향)이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함